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 업무 매뉴얼 (수요처용)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업무매뉴얼 활용 안내

## 활용 전 알아보기

- 자원봉사종합보험 제도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다양해지는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서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자원봉사활동을 보장하고 격려하며, 신체적 및 경제적 손실과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합니다.
- 본 업무매뉴얼은
  - ① 자원봉사종합보험 사업의 이해와 필요성 및 운영현황 공유
  - ② 자원봉사 수요처 담당자들이 보험 관련한 정보를 전달받을 수 있는 '2023 자원봉사종합보험 카카오플러스 친구' 안내
  - ③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의 변경된 주요 변경사항(보장담보 및 보장범위), 보험 청구 업무절차, 주요 사례를 공유하며 기관에서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 시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 활용 대상

- 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및 자원봉사활동 수요처 보험 업무담당자

### 활용 방법

- 각 지역 및 기관에서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홍보 및 안내 시 참고해 주세요. (보장담보 및 보장범위)
- 기관의 보험업무 담당자가 변경이 되거나 자원봉사종합보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할 때 활용해 주세요.
- '자원봉사종합보험'이라는 정식 명칭을 사용해 주세요. (지역별 상이 ex.자원봉사상해보험, 자원봉사종합상해보험 등)

### 관련 법령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2023~2027 / 1-1-1)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5조 1항)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1조)

---

## 자원봉사종합보험

- 자원봉사종합보험
- 운영 개요, 현황
- 운영 체계 및 역할
- 기관별 추진 순서

---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사항

- 사업개요
- 주요 변경사항
- 담보 및 보상현황

# 자원봉사종합보험

# 자원봉사종합보험

---

##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자원봉사자의 신체적 및 경제적 손실과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손괴에 대한 보호 ”

-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사회복지사업법, 청소년활동진흥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학교안전사고예방 및 보상법에 근거
- ✓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활동 중 입을 수 있는 손해에 대해 경제적 담보를 제공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봉사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 및 격려
- ✓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사고 발생 우려에 대한 경제적 · 심리적 불안 해소
- ✓ 기관별 보유 개인 정보 유출 등의 사고로 발생하는 자원봉사자의 손해 보호
- ✓ 2006년 지자체별 시행, 2017년 ~ 자원봉사종합보험 통합계약 수행

# 자원봉사종합보험

## 운영 개요

\*3개 부처 :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구분	2017년 ~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계약방법	3개 부처 통합계약			
계약기간	1년 단위 05.01 ~ 04.30	2020.05.01 ~2021.04.30 (1년)	2021.05.01 ~2022.04.30 (1년)	2022.05.01 ~2023.04.30 (1년)
예산액	1년 단위 30.9억(총92.7억)	31억	29.5억	31억
지급액	평균 1,971,759,492원 (총5,915,278,476원)	1,111,682,867원	1,335,943,571원	2,475,863,507원
집행건수	평균 2,112건 (총6,337건)	1,240건	1,145건	1,496건
손해율	평균 61.2%	35.8%	45.2%	79.8%

# 자원봉사종합보험

## 운영 체계 및 역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험료 예산 지원
- **운영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보험제도 운영  
[공동운영 기관: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자원봉사활동기관**은 자원봉사자가 등록되어 활동하거나 봉사활동을 주관하는 기관으로, 각 포털(1365,VMS,Dovol)에 가입된 자원봉사자를 보험 가입자로 함.
- 사고발생 시 **자원봉사시행기관**은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청구, 필요시 보험사와 함께 조사
- **보험사**는 매년 나라장터를 통해 선정, 사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 자원봉사종합보험

## 기관별 추진 순서

### 운영지원 협의체

3월

입찰 공고

4월

응찰  
제안서 제출  
제안서 평가  
협상  
낙찰  
계약체결

### 보험사

5월

시행 기관별 청약서 안내

보험료 납입 안내  
증권 발행  
(각 센터 이메일)

### 시행기관

3~4월

시도별 및 기관  
보조금 확정  
예산 확인

5월

청약서 수신 후 보험사로 회신

보험료 납입 안내에 따른  
보험료 납입  
(각 센터 이메일)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 사항

#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사항

---

## 사업개요

**사업기간** ..... 2023. 01. 01 ~ 2023. 12. 31(1년간)

**보험기간** ..... 2023. 05. 01 ~ 2024. 04. 30, 24:00까지(1년간)

**사업예산** ..... 금 2,682,000,000원

**계약방법** ..... 공개경쟁(나라장터를 통한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가입대상** ..... 자원봉사활동 중 입은 상해 등의 피해를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자원봉사자

**납입방법** ..... 보험 계약일 30일 이내 납부 / 각 기관별 직접 납부 / 2회 분할납부 가능

# 자원봉사종합보험 주요사항

---

## 자원봉사활동의 범위 · 자원봉사활동 중의 범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 7조]

- 자원봉사활동(정규 활동, 특별활동 포함)에 직접 참여 중인 때
-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 장소에 있는 동안
-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 장소와 피보험자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사전에 계획된 공식 활동(숙박 포함)의 경우는 모두 포함(단, 음주·이탈 등 사회통념에 어긋난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
- 재난복구 활동 시 재난에 대해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단, 음주·이탈 등 사회통념에 어긋난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
- 개인정보 유출 위험성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개인정보 주체(시행기관)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단, 사업 시행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과 관련된 목적 이외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거나 사회통념에 어긋난 사유로 인한 사고는 제외)
- 국외 자원봉사활동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도 보장
- 비대면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 자원봉사 시행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된 경우 보장
- 지역사회 비공식 봉사자 및 일회성 봉사자에 대해 자원봉사 시행기관에서 자원봉사활동으로 인정된 경우 보장(ex 플로깅 등)
- 자원봉사활동 중 받게 되는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도 보장(ex.심리상담 등)
- 자원봉사활동 중 제3자에게 신체적, 재물상의 피해에 대한 법률적인 배상책임에 대해서도 보장(ex 변호사 비용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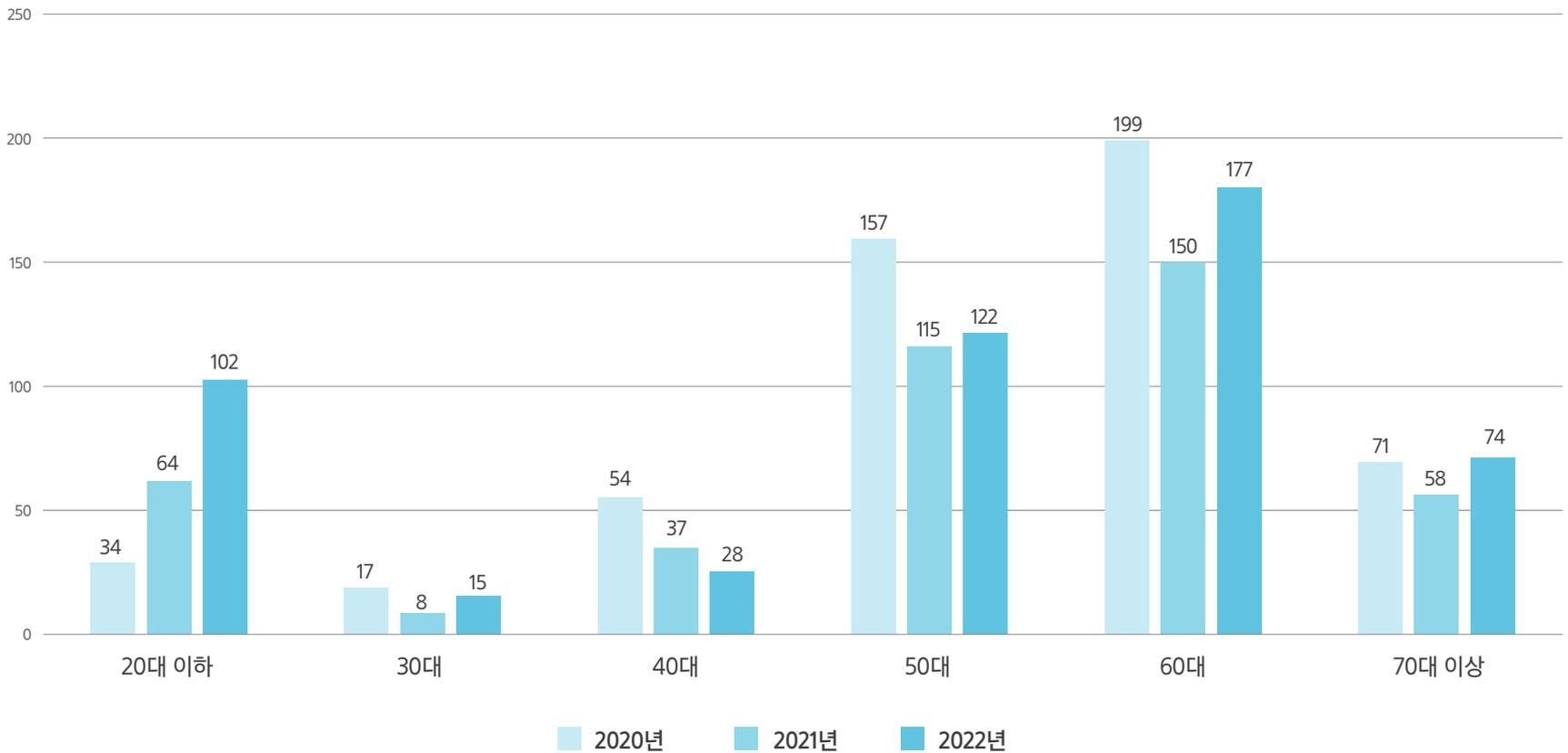
#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 현황

## 담보 및 보상 현황

담보명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상해사망/상해후유장애/상해입원일당/상해통원일당	○	○	○	○	○	○	○
자원봉사배상책임/주최자배상/구내치료비/식중독보상금	○	○	○	○	○	○	○
골절치료비/골절수술비/화상진단비/화상수술보상금	○	○	○	○	○	○	○
특정전염병보상금/얼굴성형비용보장/의사상자상해위험	○	○	○	○	○	○	○
자연재해사망/자연재해구내치료비	-	○	○	○	○	○	○
성폭력보상금/성폭력상해보상금	○	○	○	○	○	○	○
교통상해입원일당	-	-	○	○	○	○	-
폭력피해보상금/강력범죄발생보장	-	-	○	○	-	-	○
교차배상(피보험자간), 자원봉사자배상책임,주최자배상	-	-	-	○	○	○	○
화재폭발붕괴사망, 상해후유장애	-	-	-	-	○	○	-
뺑소니/무보험상해사망, 상해후유장애	-	-	-	-	○	○	○
자동차보험자기부담금 보상	-	-	-	-	○	○	○
자동차사고변호사선임비용	-	-	-	-	○	○	-
정신적 피해 시,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	-	-	-	-	-	○	○
교통사고처리지원금	-	-	-	-	-	-	○
사회재난 사망	-	-	-	-	-	-	○
생산물배상책임보험	-	-	-	-	○	○	○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	-	-	-	-	○	○	○
비고	17가지 (필15/특2)	19가지 (필17/특2)	23가지 (필17/특6)	25가지 (필17/특8)	26가지 (필17/특9)	27가지 (필21/특6)	26가지 (필21/특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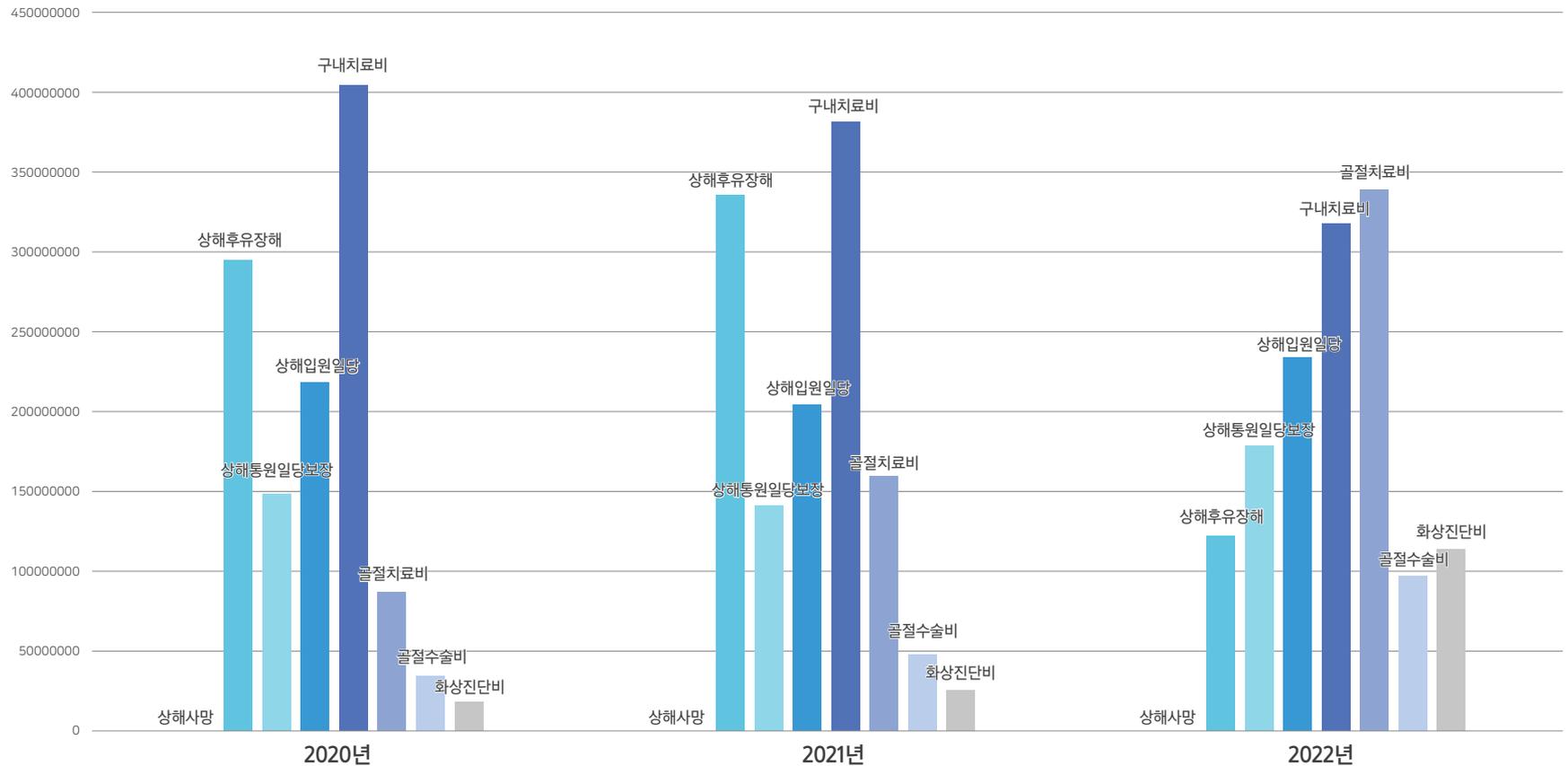
#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 현황

## 연령별 보상 현황



#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 현황

## 담보별 보상 현황



#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 현황

## 사망, 상해 현황

누적기간 2006년~2022년(17년)

구분	총 인원	최고보상금	평균 보상금	최저 보상금
사망	28명	202,575천원	200,486천원	200,000천원
상해	8,991명	112,716천원	2,895천원	2,300원

구분	200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소계
사망	22	2	1	-	-	3	28
상해	6,239	661	644	482	447	518	8,991
소계	6,261	663	645	482	447	521	9,019

### 주요 사망 사고사례

(서울/4건) 교통봉사활동 중 교통사고발생, 치료 중  
 (부산/2건) 물탱크 추락, 교통지도 활동 중 교통사고  
 (대구/2건) 자율방법활동, 교통지도 활동 중 교통사고  
 (경기/7건) 수해 실종자 수색, 고장차량 조치 중, 순찰 중,  
 봉사활동장소로 이동 중  
 (강원/2건) 급식보조활동 중,  
 할머니 택시태워드리기 활동 중 교통사고  
 (충북/1건) 봉사활동 후 귀가 중 교통사고  
 (충남/3건) 관광안내 중 심장쇼크,  
 집수리 봉사활동 운전 중 교통사고  
 (전북/3건) 집짓기 봉사활동 이동 중,  
 제설작업으로 인한 교통사고  
 (경북/1건) 김장담그기 활동 중  
 (경남/1건) 관광안내 활동 중 버스 추락사고  
 (제주/2건) 야간방법 순찰 중 바다 추락사고,  
 구호물품 수령 이동 중 추락사고

2023 자원봉사종합보험

# 함께 꿈꾸는 자원봉사의 성장



“최고, 최적의 보험플랜 구성”

“전문성의 최정점, 진화하는 서비스”

“보험 이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종합계약 운영사업”

---

## 목 차

1. 보장 플랜 핵심 요약	19
2. 보장 플랜 담보 요약 및 보상청구 時, 구비서류	31
3. 보장 플랜 담보 別 상세 설명	38
4. 사고 사례(시사점 위주)	63
5. Q & A	71
6. 자원봉사 사고 안전 수칙 가이드	83
7. 전용CS센터 & 카카오톡 채널	92

---

# 1. 보장 플랜 핵심 요약

(2023년 5월 1일 사고부터 적용)

# 1. 보장플랜 핵심 요약 - 기본담보 지급금액 하향(1)

## 기본담보 지급금액 조정

상해통원일당: 상해사고 발생 시, 통원 1회당 정액 지급(22년 5만원)

상해입원일당: 상해사고 발생 시, 입원 1회당 정액 지급(22년 10만원)

상기 일당은 상해 사고 시 반드시 지급하는 기본담보

## 입원일당 하향(전년 比 -3만원)

예산 內 적정 손해율 관리를 위한 조치 1

2023년 5월 1일 사고부터

## 상해 입/통원 일당

상해통원일당, 5만원(30일 한도)

상해입원일당, 7만원(180일 한도)



# 1. 보장플랜 핵심 요약 - 유용담보 지급금액 하향(2)

## 유용담보 지급금액 조정

화상/골절진단비: 화상/골절 진단 시, 진단위로금 지급(22년 각 300만원)

화상/골절수술비: 화상/골절수술 시, 수술위로금 (22년 각 300만원)

## 지급보험금 하향(전년 比 -1백만원)

예산 內 적정 손해율 관리를 위한 조치 2

2023년 5월 1일 사고부터

## 화상/골절 진단수술비

화상/골절진단 ⇒ 각 200만원

화상/골절수술 ⇒ 각 200만원



# 1. 보장플랜 핵심 요약 - 상해 사고를 위한 치료비 한도 (전년 동일)

## 자원봉사자 상해에 대한 개인부담금 Zero化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자원봉사자에게 최고의 혜택을 제공

### 담보 내용

자원봉사활동 중

**구내치료비**

(자연재해 구내치료비)

**1억원**

(1억원)

봉사활동중 사고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

**병원치료비 1억원 보장**

※자연재해 상해치료 시에도 1억원 보장

- ✓ 발생 사고 중 94%가 상해 치료비 지급 대상으로 가장 핵심 담보
- ✓ 자원봉사활동 중 인과관계가 있는 정신과 치료 필요시에도 상기 한도로 담보

# 1. 보장플랜 핵심 요약 - 최근 사회적 이슈 반영, 자원봉사활동 중 사회재난 담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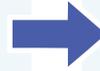
**사회재난이란?**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재난

## 주요 담보 확대 내용

자원봉사활동 중  
**사회재난으로  
사망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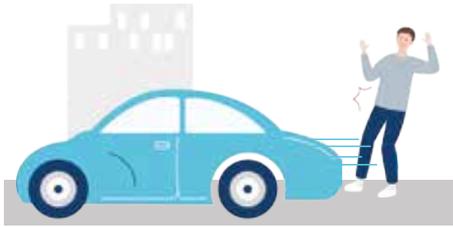
기본案  
**상해사망  
2억원**



제시案  
**2억원  
+  
2억원**

기존 상해사망 2억과  
사회재난 사망보험금 추가 2억  
**총 4억 지급**  
(감염병 제외)

# 1. 보장플랜 핵심 요약 - 급증하는 봉사활동 중 자동차 사고에 대한 보장 강화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후유장해 시**

기본 상해사망  
후유장해 2억원  
+  
뺑소니/무보험차  
사망/후유장해 5억원  
  
최대 7억원



**자동차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금이 필요한 경우**

운전자보험 대표 담보  
자원봉사종합보험에 편입

사망 5천만원  
치료비 기간에 따라 5천만원  
1, 2급 부상 시 3천만원  
(한도 내 합의금 지원)



**자원봉사자가 자기소유의  
차량으로 봉사활동 중  
차량파손사고 발생 시**

**자동차보험의  
자기부담금 보상**

사고당 50만원 한도

# 1. 보장플랜 핵심 요약 - 필수 담보 가입금액 상향 유지 & 자원봉사자 인권 보호 담보



**자원봉사자가 봉사활동 중  
제3자의 신체와 재물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또한, 면책이었던  
자원봉사자간 손해도 동일하게 담보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한도 상향**

2억원



**자원봉사 활동 중  
정신적 피해를 입음으로써  
소송제기를 당하거나  
소송제기를 할 경우**

법률비용 1천만원  
(방어비용은 자기부담금 無  
소송제기 시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

# 1. 보장플랜 핵심 요약 - 담보 현황 정리

## '23년 혜택 Up 담보 구성 案 (기준담보 + 확대, 추가 담보)

담보	'23년 기준 案	'23년 당사 제시 案	
		가입금액	비고
1. 상해사망/상해후유장해/의사상자	각 2억원	각 2억원	
2. 상해입원일당/통원일당	7만원 / 5만원	7만원 / 5만원	
3. 자원봉사배상책임 / 주최자배상(영업배상)	1억원 / 5억원	2억원 / 5억원	+ 1억원 증액 /
4. 치료비 (천재지변 치료비 포함)	5천만원	1억원	+ 5천만원 증액
5. 골절진단/화상진단/골절수술/화상수술	각 200만원	각 200만원	
6. 얼굴 성형비용/특정전염병, 식중독	5백만원/1백만원	5백만원/1백만원	
7. 성폭력범죄보상금 /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	1천만원/5백만원	1천만원/5백만원	
8. 자연재해 사망	5억원	5억원	
9. 사회재난 사망	없음	2억원	담보 신설
10. 뺑소니/무보험차 상해사망, 상해후유장해	없음	5억원	담보 신설
11.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II	없음	5천/5천/3천	담보 신설
12. 자동차사고 자기부담금 보상	없음	50만원	담보 신설
13. 정신적 피해 시, 소송에 따른 법률 비용	없음	1천만원	담보 신설

실질담보  
가입금액 대폭 상향

사회적 이슈  
담보 新 개발

교통사고 대비,  
3대 효용담보 추가

봉사자 인권보호  
담보 新 개발

※ 상해 주담보 중복보상 가능(3,11번 담보 제외), 생산물배상 5억원, 개인정보배상 2억원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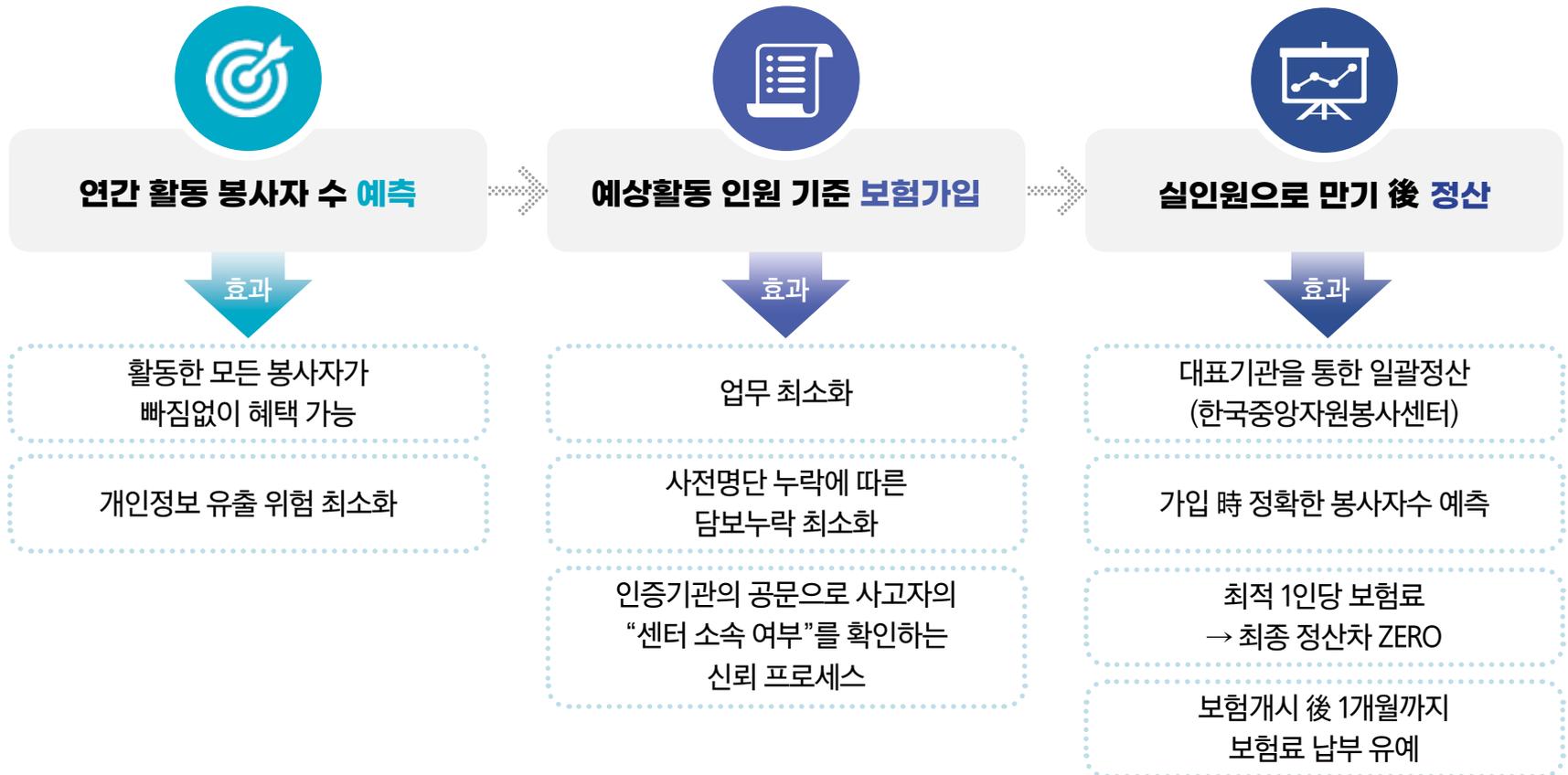
# 1. 보장플랜 핵심 요약 - `23년 삭제 담보

## 사고 건수 및 혜택이 미미한 담보 폐쇄

담보	기존	비고
교통상해 입원일당	10만원	23년 4월 30일 사고까지 담보  2023년 5월 1일부터 수담보
폭발, 화재, 붕괴 상해사망	5억원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5억원	
자동차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5백만원	
헌혈 후유증 보상	1백만원	

# 효율적인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

효율적인 자원봉사종합보험 운영을 위해 예상 활동 인원으로 가입 후, 확정 인원 정산 Process 운영



# 해외 자원봉사 활동 및 외국인 자원봉사자 담보

## 해외 자원봉사 활동 및 외국인 자원봉사자 담보



01.  
해외 자원봉사 활동

- 국내와 동일하게 해외 자원봉사 활동 시에도 담보
- 단,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한 활동으로 제한



02.  
외국인 자원봉사자

- 국내 자원봉사자와 동일하게 담보
- 단,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한 대상으로 제한



제4차 국가기본계획에 따른 국내·외 자원봉사 간  
**파트너십 교류 체계 강화를 위한 토대**

# 자원봉사종합보험 담보 범위 및 업무 표준화

사업 시행 기관 다양화로 각 기관에 통합 적용 가능하도록

자원봉사활동 정의 및 수년간 운영 know-how를 기반으로 분쟁 발생 최소화

자원봉사  
활동 기준  
(기본법)

- 자원봉사활동 인증기관(자원봉사센터 등)의 인증을 받은 활동을 자원봉사활동의 범주로 인정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7조 근거, 자원봉사실적확인서 및 인증기관장 명의 공문

자원봉사활동  
범위

- 자원봉사센터 · 사회복지협의회 · 청소년활동진흥원의 자원봉사활동 정의 특성 포괄
- 봉사 활동 + 자택/봉사활동 장소간 일상적 경로 이동(숙박, 사전에 인증기관에서 인증한 계획된 공식활동 포함)  
(단, 사후 승인 행사 · 활동이나 음주 · 무단 이탈 등 자원봉사주관기관의 관리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는 제외)
- 비대면 봉사활동도 향후 표준화된 기준이 도입되면 포함하여 보상

분쟁  
처리 방안

- 자원봉사활동 판단 관련 분쟁은 “자원봉사 Claim 협의체” 를 통해 판단
- “자원봉사 Claim 협의체” 에서 분쟁 해소가 안 되는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처리

➔ 자원봉사활동의 정의를 포괄하여 관련 분쟁을 최소화하고 **향후 표준화된 정의로 정착**

---

## 2. 보장플랜 담보 요약 및 보상청구 時, 구비서류

## 2. 보장플랜 담보별 설명 - 담보 요약 및 청구 시 구비 서류

담보	가입금액	보장내용 요약	청구 시 구비 서류
상해사망 (15세 미만 제외)	2억원	봉사활동 중,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지급	사망진단서, 상속관계확인서류,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사회재난 사망 (15세 미만 제외)	2억원	봉사활동 중,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상해사망 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감염병 제외) ※ 사회재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정의된 사회재난으로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재난	사망진단서, 상속관계확인서류, 피보험자의 기본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상해후유장해	최대 2억원	봉사활동 중,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 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	장해진단서
의사상자 상해위험	2억원	봉사활동 중, 타인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구제하다가 법률에 의해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령인 통장사본
상해입원일당	7만원	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병원 또는 의원에서 1일 이상 계속 입원하여 치료를 받는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입원 일당을 지급 (단,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의 입원에 한하여 지급)	진단서, 입퇴원확인서, 초진차트(상해내용 확인 위함)

※ **전 담보 청구시, ①보험금 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해당센터에서 발급된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는 필수 서류임**

※ **담보 보상 상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2. 보장플랜 담보별 설명 - 담보 요약 및 청구 시 구비 서류

담보	가입금액	보장내용 요약	청구 시 구비 서류
상해통원일당	5만원	봉사활동 중,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병원 또는 의원에서 1일 이상 계속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1일에 대하여 통원일당을 지급 (최대 30일 한도)	진단서, 통원확인서, 초진차트(상해내용 확인 위함)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2억원	봉사활동 중,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 자원봉사자 간, 배상책임도 보상	대물배상: 수리견적서(영수증), 관련사진 대인배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자원봉사센터 주최자 배상책임	5억원	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해당기관이 피해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	대물배상: 수리견적서(영수증), 관련사진 대인배상: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구내치료비 (자연재해포함)	1억원 한도	봉사활동 중, 발생한 상해사고의 치료비를 보험가입한도 내에서 보상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치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 진단서(300만원 이상 고액사고 시)
골절치료비	2백만원	봉사활동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상	진단서, 초진차트(상해내용 확인 위함)

※ **전 담보 청구시, ①보험금 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해당센터에서 발급된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는 필수 서류임**

※ **담보 보상 상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2. 보장플랜 담보별 설명 - 담보 요약 및 청구 시 구비 서류

담보	가입금액	보장내용 요약	청구 시 구비 서류
골절수술비	2백만원	봉사활동 중,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로 수술한 경우 보상	진단서, 수술확인서 초진차트(상해내용 확인 위함)
화상진단비 (2도 이상)	2백만원	봉사활동 중,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이 확정된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진단서, 초진차트(상해내용 확인 위함)
화상수술보상	2백만원	봉사활동 중, 신체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약관의 [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진단서, 수술확인서 초진차트(상해내용 확인 위함)
얼굴성형비용	5백만원	봉사활동 중,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 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에 외형상의 장애로,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1cm당 14만원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보상	진단서, 수술확인서 (or 수술기록지-수술 CM 명시)

※ **전 담보 청구시, ①보험금 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해당센터에서 발급된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는 필수 서류임**

※ **담보 보상 상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2. 보장플랜 담보별 설명 - 담보 요약 및 청구 시 구비 서류

담보	가입금액	보장내용 요약	청구 시 구비 서류
특정전염병보상	1백만원	봉사활동 중, 약관의「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을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확정진단서
식중독보상	1백만원	봉사활동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가입금액을 보상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성폭력범죄보상	1천만원	봉사활동 중, 약관에 기재된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가입금액 보상	진단서, 공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성폭력범죄 상해보상	5백만원	봉사활동 중,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하여 1개월을 초과하는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가입금액을 보상	진단서, 공소장, 사건사고사실확인원

※ **전 담보 청구시, ①보험금 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해당센터에서 발급된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는 필수 서류임**

※ **담보 보상 상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2. 보장플랜 담보별 설명 - 담보 요약 및 청구 시 구비 서류

담보	가입금액	보장내용 요약	청구 시 구비 서류
자연재해 상해사망 (15세 미만 제외)	5억원	봉사활동 중, 자연재해로 상해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보상 (상해사망 담보 보험금 2억원도 별도 지급)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령인 통장사본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15세 미만 제외)	최대 5억원	봉사활동 중,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가입금액을 보상 (상해사망 담보 보험금 2억원도 별도 지급)	사망진단서, 상속관계증명서류, 상속인의 기본증명서, 위임 시 위임장, 인감증명서, 수령인 통장사본
뺑소니, 무보험차 후유장해	최대 5억원	봉사활동 중, 뺑소니, 무보험차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 (상해사망후유장해 2억원도 동일방식 별도 지급)	장해진단서
자동차보험 형사합의금 보상	최대 5천만	자동차 운전 중 사고로 타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합의를 한 경우, 형사합의금을 아래 한도로 보상  사망 시 5천만원, 치료 시 약관에서 정한 부상정도에 따라 최대 5천 중상해를 입혀 공조제기 or 상해급수 1~3급, 최대 5천	사고 발생 시 개별 안내

※ **전 담보 청구시, ①보험금 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해당센터에서 발급된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는 필수 서류임**

※ **담보 보상 상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2. 보장플랜 담보별 설명 - 담보 요약 및 청구 시 구비 서류

담보	가입금액	보장내용 요약	청구 시 구비 서류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50만원 한도	차량으로 봉사활동 중, 차대차사고로 인해 차량손해 발생 시, 자동차보험으로 자차손해를 처리하고 부담하여야 하는 자기부담금을 보험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사고당 보상	자동차보험증권, 자차보험금 지급확인서
정신적피해 소송비용	1천만원 한도	자원봉사 활동 중, 정신적 피해(인격침해, 성희롱 등)로 이해, 소송을 당하거나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률비용을 한도 내에서 담보 (방어비용은 자기부담금 無, 소송제기 시에는 자기부담금 50만원)	사고 접수 시, 상담 후 개별 안내

※ **全 담보 청구시, ①보험금 청구서 ②개인정보처리동의서 ③해당센터에서 발급된 자원봉사활동 인증서는 필수 서류임**

※ 담보 보상 상세한 내용은 약관 참조

---

### **3. 보장 플랜 담보 別 상세설명**

(2023년 5월 1일 사고부터 적용)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사망

2억원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약정한 사망보험금 지급

\*상해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입은 상해

### ※ 「사망」에 포함되는 경우

“사망”에는 보험기간 중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포함함.

1.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 법원에서 인정한 실종기간이 끝나는 때에 사망한 것으로 봄
2. 관공서에서 수해, 화재나 그 밖의 재난을 조사하고 사망한 것으로 통보하는 경우  
: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사망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이란?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 중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사회재난으로 인하여 상해사망 발생 시 사망보험금 지급

#### \* 사회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에서 정의된 "사회재난" 으로서 재난 대응을 위해 재난안전대책본부가 가동된 재난

\* 재난안전대책본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4조(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제1항에 의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항에 의한 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를 말합니다.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나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은 제외합니다.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애지급률에 해당하는 장애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장애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

### ※ 장애관련 추가 규정

- 장애지급률이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 이내에 확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상해 발생일부터 180일이 되는 날의 의사 진단에 기초하여 고정될 것으로 인정되는 상태를 장애지급률로 결정함.
- ‘장애’는 상해 치료 후 신체에 남아 있는 영구적인 정신 또는 육체의 훼손상태
- ‘영구적’? 장래 회복할 가망이 없는 상태로서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 치료 종결 후 한시적으로 나타나는 장애에 대하여는 그 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 해당 장애지급률의 20%를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급
- 같은 상해로 두 가지 이상의 후유 장애 발생의 경우, 후유 장애 지급률을 더하여 지급
- 다른 상해로 후유 장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 그 때마다 이에 해당하는 장애지급률 결정.

※ 상기 사항은 약관의 주요 내용을 발췌한 것으로, 세부사항은 약관의 장애분류표 각 신체 부위별 판정기준에 따라 결정 적용됨.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직무 외의 행위로 타인의 생명,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 또는 재산의 급박한 피해를 구제하다가 신체에 상해를 입어 「의사상자에우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의사상자로 판정되는 경우 이 특별약관에 따라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의사자의 경우 피보험자의 상속인, 의상자의 경우 피보험자)에게 보상

보험금액은 「의사상자에우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의 규정에 의거 정부가 지급하는 금액으로 함.

단,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항 1호의 사망보험금을 한도로 하며,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 ①항 1호에 해당하는 지급사유를 보상에서 제외하기로 한 경우는 1억원을 한도로 함.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입원 일당

1일당 7만원 (180일 한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발생한 상해사고의 직접결과로서 생활기능 또는 업무능력에 지장을 가져와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입원하였을 경우 입원 1일에 대하여 보험가입금액을 입원 일당으로 지급. 다만, 입원일당의 지급일수는 1회 입원당 180일을 한도로 합니다.

※ 동일한 상해의 치료를 목적으로 2회 이상 입원한 경우는? ⇒ 1회 입원으로 보아 입원일수를 합산

##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 통원 일당

1일당 5만원 (30일 한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통원 1일당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통원일당으로 지급.

- 통원일당의 지급일수는 (30)일을 한도로 함.
-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치료에 대하여는 보험 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을 한도로 제1항의 통원일당을 계속 보상
- 하나의 상해로 인해 하루에 같은 치료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에 2회 이상 통원 치료 시 1회의 외래로 보아 통원일수를 합산하여 제1항을 적용합니다.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의수, 의족, 의안, 의치 등 신체보조장구는 제외합니다)의 장애 또는 재물 손해(재물의 없어짐, 훼손 혹은 망가짐)에 따른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의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따라 가중된 배상책임
-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존(민법 제 777조 규정의 범위와 같습니다)에 대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의 파손에 대하여 그 재물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심신상실로 인한 배상책임
-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른 폭행 또는 구타로 인한 배상책임
- 항공기, 선박, 차량(원동력이 인력에 의한 것은 제외합니다), 총기(공기총은 제외합니다)의 소유, 사용 또는 관리로 인한 배상책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피해자가 입은 신체상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등 천재지변
4.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
5.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치료비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의하여 발생한 치료비
9. 공해물질의 배출, 방출, 누출 등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0. 사고일로부터 2년 후에 발생한 치료비
11. 피보험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이 있는 치료비
13. 피보험자의 수급인이 수행하는 업무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4. 피보험자나 피보험자의 동업자, 임차인, 기타 피보험자 구내의 상주자 또는 이들의 근로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17. 각종의 신체적 훈련, 운동경기 또는 시합에 참가도중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 제2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제3호(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 ※ 구내치료비 추가특별약관의 보상하지 않는 손해의 내용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1.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2.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3.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신체장해에 대한 치료비

# 자원봉사활동 중, 골절치료비, 골절수술비

각 2백만원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 골절 치료비

-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별표】(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골절 치료비용으로 피보험자에게 지급
-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치아파절 포함)

### ■ 보상하는 손해 - 골절 수술비

-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의 직접결과로서 **【별표】(골절분류표)**에 정한 골절(이하「골절」이라 합니다)로 수술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금액을 골절수술비로 지급
- ② 제1항의 보험금은 1사고마다 지급하며, 하나의 사고로 인하여 2가지 이상의 골절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머리뼈 및 얼굴뼈의 골절	S02
2. 머리의 압착손상	S07
3. 상세불명의 머리손상	S09.9
4. 목의 골절	S12
5. 갈비뼈, 복장뼈 및 등뼈의 골절	S22
6. 허리뼈 및 골반의 골절	S32
7. 어깨 및 팔죽지의 골절	S42
8. 아래팔의 골절	S52
9. 손목 및 손부위의 골절	S62
10. 넓적다리뼈의 골절	S72
11. 발목을 포함한 아래다리의 골절	S82
12. 발목을 제외한 발의 골절	S92
13. 여러 신체 부위를 침범한 골절	T02
14. 척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08
15. 팔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0
16. 다리의 상세불명 부위의 골절	T12
17.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골절	T14.2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 화상진단비(2도 이상)

- ① 보험기간 중에 제2장 상해조항 제3조(보험금의 지급사유)에서 정한 신체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화상 분류표)에서 정한 화상으로 진단 확정된 경우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진단금으로 지급
- ② 1사고마다 지급하며, 동일한 사고로 2가지 이상의 화상 상태가 된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보상

### ■ 보상하는 손해 - 화상수술 보상금

- ① 자원봉사활동 중 신체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서 (화상 분류표)에서 정하는 화상을 입고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때 수술 1회당 보험증권에 기재된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화상수술급여금으로 지급
- ② 위 제1항의 피보험자가 동시에 두 종류 이상의 화상 수술을 받을 경우에는 한 종류의 화상수술보상금만을 지급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위생관리, 미모를 위한 성형수술  
(단, 사고 전 상태로의 회복을 위한 수술을 포함합니다)
- 선천적 기형 및 이에 근거한 병상

분류항목	분류번호
1. 머리 및 목의 화상 및 부식	T20
2. 몸통의 화상 및 부식	T21
3. 손목 및 손을 제외한 어깨팔의 화상 및 부식	T22
4. 손목 및 손의 화상 및 부식	T23
5. 발목 및 발을 제외한 엉덩이 및 다리의 화상 및 부식	T24
6. 발목 및 발의 화상 및 부식	T25
7. 눈 및 부속기에 국한된 화상 및 부식	T26
8. 호흡기도의 화상 및 부식	T27
9. 기타 내부기관의 화상 및 부식	T28
10. 여러 신체부위를 침범하는 화상 및 부식	T29
11. 상세불명 신체부위의 화상 및 부식	T30
12.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화상	T31
13. 포함된 신체표면의 정도에 따라 분류된 부식	T32
14. 방사선과 관련된 피부 및 피부밑조직의 기타 장해	L59

# 자원봉사활동 중, 얼굴 성형비용 보장

한도 5백만원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 ①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상해사고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등에서 치료를 받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인하여 안면부(이마를 포함하여 목까지의 얼굴부분을 말합니다)에 외형상의 반흔이나 추상장애, 신체의 기형이나 기능장애가 발생하여 그 원상회복을 목적으로 사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로부터 성형수술을 받은 경우 아래에 정한 금액을 얼굴성형비로 지급

구분	얼굴성형비
지급액	수술 1cm당 14만원

주) 길이측정이 불가한 식피술등의 경우 수술 Cm는 최장직경으로 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정한 얼굴성형비는 하나의 사고에 대하여 500만원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다만, 동일부위에 대한 성형수술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최초로 받은 수술에 대해서만 지급합니다.

# 자원봉사활동 중, 특정전염병 보상금

1백만원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특정전염병 분류표」에서 정한 특정전염병에 감염되어 전염병환자로 진단받아 치료를 받은 경우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보상금으로 지급합니다.
- ② 제1항에서 진단이라 함은 전염병의 병원체가 인체 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자가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의 진단기준에 의한 의사의 진단 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이 되고, 감염법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하여 해당 보건소장에게 전염병환자로 신고되는 것을 말합니다.
  - 제1군 전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상세불명의 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페스트
  - 제2군 전염병: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해, 급성 회색질척수염, 일본뇌염, 홍역, 볼거리
  - 제3군 전염병: 탄저병, 브루셀라증, 렙토스피라증, 성홍열, 수막알균 수막염, 기타 그람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리지오넬라증,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타이피에 의한 발진티푸스, 리켓치아 쯤쯤가무시에 의한 발진티푸스, 콩팥(신장) 증후군을 동반한 출혈열, 말라리아

# 자원봉사활동 중, 식중독 보상금

1백만원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 ① 자원봉사활동 중 음식물의 섭취로 인해 중독(이하 「식중독」이라 합니다)이 발생하고 그 직접적인 결과로 병원 또는 의원(한방병원 또는 한의원을 포함합니다)에 **2일 이상**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이 특약의 보험가입 금액을 식중독보상금으로 지급.  
다만, 입원하지 않고 외래진료만 받은 경우는 제외
- ② 제1항에서 식중독이라 함은 음식을 먹고 생기는 구토, 설사, 복통을 주요 증세로 하는 급성질환으로써 **【별표 (식중독 분류표)】**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분류되는 경우

분류항목	분류번호
1. 기타 살모넬라감염	A02
2. 이질	A03
3.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세균성 창자 감염	A04
4. 기타 세균성 식중독	A05
5. 아메바증	A06
6. 기타 원충성 장질환	A07
7. 해산물로 섭취한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T61
8. 식품으로 섭취한 기타 유해물질의 독성효과	T62

## 자원봉사활동 중, 성폭력범죄 보상금

1천만원

## 자원봉사활동 중, 성폭력범죄 상해보상금

5백만원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였을 경우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성폭력범죄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피보험자에게 약관에 기재된 성폭력범죄로 피해가 발생(이하 「성폭력범죄피해의 발생」이라 합니다)하여 1개월을 초과하여 의사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상해를 입었을 경우 이 특별약관 보험가입금액 전액을 성폭력범죄상해보상금으로 보험수익자(보험수익자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피보험자)에게 지급

### 담보설명

#### ■ 주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및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 보험수익자의 고의에 의한 성폭력범죄. 그러나 보험수익자가 두 사람 이상일 때 다른 사람이 수취할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기타 이들과 유사한 사태 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 지진, 분화,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 중에 생긴 성폭력범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연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합니다)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가입금액을 지급합니다.

1. '자연재해'라 함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정의) 제1호 가목에서 정의된 '자연재난' 및 '열사병 및 일사병'으로 아래의 사고를 말합니다.
  - 가. 자연재난: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낙뢰, 가뭄,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
  - 나. 열사병 및 일사병: 제7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중 분류번호 T67.0(열사병 및 일사병)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제7차 개정 이후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분류표에 따릅니다.
2. 제1호의 '자연재난'에 의한 사망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20조(재난상황의 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제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에 의해 보고된 경우에 한합니다.

# 자원봉사활동 중,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고

사망 시 5억원

후유장해 시 최대 5억원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사망)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의 직접결과로써 사망한 경우

### ■ 보상하는 손해 (후유장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뺑소니사고, 또는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인한 상해로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각 장해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해당 장해분류표에서 정한 지급률을 보험가입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후유장해 보험금으로 지급

### ■ 용어설명

1. 뺑소니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보유불명의 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상해를 입고 경찰관서에 뺑소니사고로 신고되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보유불명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경우
2.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책임보험을 제외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자동차에 의해 상해를 입음으로써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 가해 자동차가 2대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전부가 무보험자동차일 때에 한합니다.

# 자원봉사활동 중,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최대 5천만원 한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자동차(이륜자동차 제외)를 운전하던 중, 타인(부모, 배우자 및 자녀는 제외)에게 상해를 입혀, 형사 합의를 한 경우, 형사 합의금으로 실제로 지급한 금액을 다음의 한도로 보상하여 드립니다.

1. 피해자를 사망하게 한 경우: 5천만원 한도
2.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42일(피해자 1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이상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다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하여 피해자가 42일 미만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도 포함합니다.

<진단 별 한도>

42일 미만 진단 시 (특정범죄 가중처벌 법률 제5조의 13)에 해당되는 사고에 한함)	42일~69일 진단 시	70일~139일 진단 시	140일 이상 진단 시
500만원	1,000만원	3,000만원	5,000만원

3. 일반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혀 형법 제258조 제1항 또는 제2항, 형법 제268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에 따라 검찰에 의해 공소제기(이하「기소」라 합니다)되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상해급수 1급, 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부상을 입힌 경우: 5천만원 한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다음의 조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계약자(단체)인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을 증권에 기재된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에 따라 보상하여 드립니다.

1. 자동차보험의 기명피보험자가 개인 또는 법인인 경우(단, 렌트차량은 제외)
2. 단체의 소속원이 부보된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담보에서 보험금 지급사실이 확인되고, 피보험자동차의 과실비율이 확정(가해차 보험사와 피해차 보험사의 과실비율 확정을 의미합니다)되어 사고처리가 완전히 종결된 경우. 단, 차대차사고에 한합니다.

# 정신적 피해 법률비용

1천만원 한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가 계약자(단체)의 소속원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타인과 발생한 분쟁으로 인하여 피보험자를 당사자로 하는 정신적 피해 관련한 민사소송사건이 대한민국 법원에서 발생한 경우(피보험자가 타인을 대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거나, 피보험자가 타인으로부터 민사소송을 제기받는 경우) 다음의 비용 손해를 보상  
변호사 보수비용, 인지액 및 송달료를 말하며, 변호사 상담료 및 자문료는 제외합니다.  
회사는 심급별로 각 호에서 정한 금액을 제3조(보험금 등의 지급한도)에 정한 바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지급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이 보험의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발생하였거나 존재하였던 분쟁에 기인한 사고
- 이 보험의 소급보장일자 이전에 피보험자에 대하여 소송 등이 제기될 것을 피보험자가 알았거나 합리적으로 알 수 있었던 분쟁에 기인된 사고
- 사고발생을 목적으로 피보험자가 고의, 사기, 악의적으로 행한 행위에 기인한 사고
- 종류를 불문한 손해배상금, 보상금, 벌금 및 과태료

# 상해 담보, 공통 보상하지 않는 경우

## 담보설명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피보험자·보험수익자·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전쟁, 외국의 무력행사, 혁명, 내란, 사변, 폭동
-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아래의 열거된 행위 중 발생한 사고  
: 전문 등반(암벽 또는 빙벽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 수상보트, 패러글라이딩
- 모터보트, 자동차(또는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흥행(연습포함), 시운전 등
- 선박에 탑승하는 것을 직무로 하는 사람이 직무상 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동안

지금까지 설명해 드린 담보들은  
**“자원봉사활동 중인 봉사자”**가 보상을 받는 담보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담보들은  
**“자원봉사센터”**가 보상이 되는 담보

# 자원봉사활동 중, 주최자 배상책임

5억원 자기부담금 10만원

## 시설소유관리자배상, 행사주최자배상, 봉사센터의 배상책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이하 시설이라 합니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이하 업무라 합니다)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행사의 주최자가 행사 주최를 위한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타인(제3자)에게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자원봉사 시행기관)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의 근로자가 피보험자의 업무에 종사 중 입은 신체장애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피보험자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 또는 관리(화물의 하역작업을 포함합니다)하는 자동차, 항공기, 선박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자원봉사활동 중, 생산물 배상책임

5억원 자기부담금 30만원

## 봉사단체가 제공하는 생산물(ex:음식물 등)에 의한 배상책임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가 제조, 판매, 공급 또는 시공한 "생산물"이 타인에게 양도된 후, 그 생산물로 생긴 우연한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의 신체장해나 재물손해에 대한 법률상의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약관에 따라 보상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법령 등을 위반하여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등으로 생긴 손해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피보험자(자원봉사 시행기관)가 소유, 점유, 임차, 사용하거나 보호, 관리, 통제하는 재물의 손해...
- 피보험자와 타인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고, 그 약정에 의하여 가중된 손해배상책임
- 생산물 및 구성요소의 고유의 흠, 마모, 찢어짐, 점진적인 품질하락에 대한 배상책임
- 생산물의 성질 또는 하자에 의한 생산물 자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개인정보 유출 등 피해 발생 시, 센터의 배상책임 담보

### 담보설명

#### ■ 보상하는 손해

피보험자의 업무수행 과정이나, 그러한 목적으로 소유, 사용, 관리하는 "개인정보"의 우연한 유출, 분실, 도난, 위조, 변조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개인정보주체에게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

#### ■ 보상하지 않는 손해

- (임)직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
- (임)직원의 고의 또는 범죄행위에 기인하여 해당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사람을 상대로 제기된 손해배상청구
-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
- 구두 또는 문서에 의한 비방, 중상에 따른 인격권 침해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개인정보 이외의 정보의 유출 등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원인의 직간접을 불문하고, 피보험자가 제공하는 전문직업과 관련한 일체의 손해배상청구
-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수 등의 반환을 요구하는 손해배상청구

---

## 4. 사고사례 (시사점 위주)

# 1. 자원봉사자간 배상책임



**사고일** 22년 4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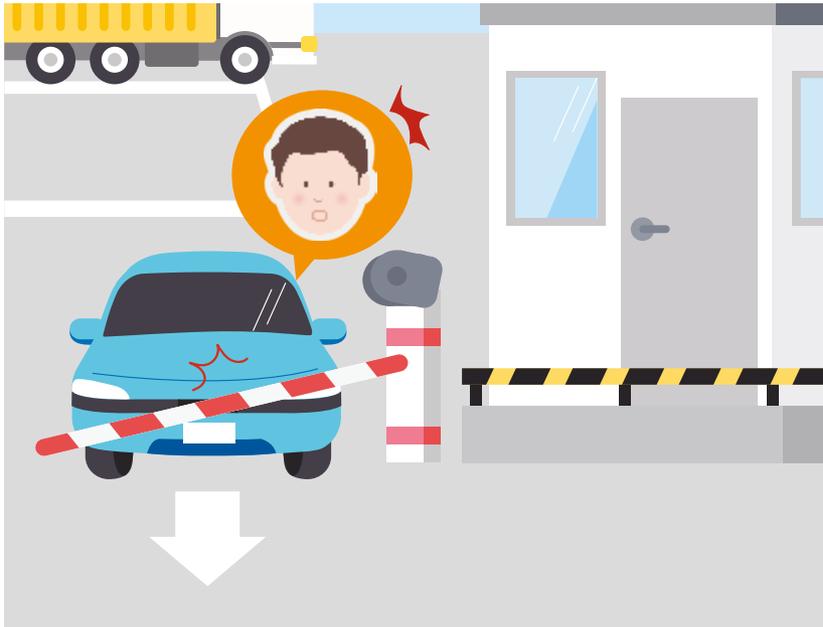
**사고내용** 음식 봉사, 삼계탕 부재료 준비중,  
봉사자의 부주의로 가위로 타 봉사자에게 상해를 입힘  
다친 봉사자는 상대방 봉사자에게 민사소송 제기

**시사점** 자원봉사자간 배상책임은 22년 4월 30일 사고까지는  
담보되지 않음

22년 5월 1일 사고부터 담보확대 개편으로  
자원봉사자간 배상책임도 담보됨

**자원봉사자 간 배상책임은 22년 5월 1일 이후 사고부터 담보됩니다.**

## 2. 자원봉사 중, 차량 운행 시 대물파손



**사고일** 22년 4월

**사고내용** 자가격리자를 위한 위생물품 정리 및 배달 자원봉사 중 차량운행으로 아파트 차단기 파손

**시사점** 국가 정책상, 자동차보험의 대물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을 받아야 하며,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자원봉사자 배상책임으로 담보되지 않음

다만, 차량운행 시라도 자원봉사자 본인의 상해 시 상해담보는 보상가능함  
(치료비는 상대방 자동차보험에서 지급)

### 3. 미성년자 상해 (청구 시 필요서류 숙지)



**사고일** 22년 3월

**사고내용** 미성년 자원봉사자가 연탄봉사활동 중 상해

**시사점** 미성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어  
보호자(부모님)에게 보험금 지급

이 경우, 가족관계증명서가 필수서류로  
1차 안내 시 숙지 필요

## 4. 봉사를 마치고 귀가 도중 상해



**사고일** 23년 1월

**사고내용** 취약계층 반찬제공 봉사 후 귀가 도중 넘어진 사고

**시사점** 보상가능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 이란?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 중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5. 2m 사다리 위에서 봉사활동 중, 낙상

---



**사고일** 22년 10월

**사고내용** 봉사활동 중, 사다리에 올라가 작업하다가  
2m 높이에서 떨어져 중증 상해 발생

**시사점** 골절치료, 골절수술 및 후유장애 발생  
위험 활동 자체를 배제하거나 활동별 나이제한 설정 검토

## 6. 제설작업 중 넘어져 중증 골절사고



**사고일** 23년 1월

**사고내용** : 폭설로 인해 인근 인도 제설작업 중 크게 넘어져 골절수술로 인해 장기간 입원 치료

**시사점** 제설작업의 위험 상, 고령자원봉사자 제한 필요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란?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 중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7. 비대면 봉사활동 중 상해

---



**사고일** 21년 11월

**사고내용** 독거노인 전화상담 봉사를 위해 이동 중 넘어짐

**시사점** 보상가능

단, 비대면 봉사활동은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검증된 비대면 봉사에 한해 보상됩니다.

---

## 5. Q & A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Q&A

**Q1** 자원봉사센터가 보상을 받는 담보의 경우, 현재 설명회를 듣는 전체 기관이 포함되는 걸까요?  
아니면 기관명이 '자원봉사센터' 인 경우만 해당이 되나요?

**A1** 자원봉사센터가 보상을 받는 담보는 다음의 세 가지이며, 대상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①주최자 배상 : 전국 자원봉사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산하 수요봉사처
- ②생산물배상 : 전국 자원봉사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및 산하 수요봉사처
- ③개인정보보호 : 전국 자원봉사센터, 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 개인정보보호의 경우 산하 수요봉사처는 비대상

**Q2** 보상하지 않는 손해에 스쿠버다이빙이 있는데 수중 환경정화활동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보장이 되지 않는 걸까요?

**A2** 자원봉사활동 중이라면 보상 가능합니다.  
하지만, 약관상 피보험자가 직업, 직무 또는 동호회 활동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Q&A

**Q3** 자원봉사자가 같은 자원봉사자나, 센터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 자원봉사자배상책임 담보로 보상이 되나요?

**A3** 2022년 5월 1일 사고부터 담보됩니다.  
(피보험자간 배상책임도 담보하는 교차배상책임 특별약관 신설)  
2022년 4월 30일까지 발생한 사고는 담보되지 않습니다.

**Q4** 치료비의 경우, 2년간 담보가 된다고 하였는데, 그 기준일이 무엇인가요?

**A4**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간의 치료비가 담보됩니다.  
또한, 1차 청구(치료) 완료 후, 추가 치료 발생 시 재청구가 가능하며  
모든 담보의 가입금액한도(일당의 경우 횟수)는 최초 청구부터 누적하여 계산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 Q&A

**Q5** 연골손상도 골절로 처리가능한가요?

**A5** 담보되지 않습니다.  
골절치료비의 경우 약관의 **【별표 2】** 골절분류표에서 정한 17가지의 골절을 담보대상으로 합니다.  
연골손상은 골절로 분류되지 않습니다.

**Q6** 자원봉사 중 사고가 발생하여 치료를 하였는데,  
추후에 자원봉사종합보험이 있는 것을 알고 청구하려 합니다.  
혹시 소급해서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이 정해져 있나요?

**A6** 관련 법령에 의거, 보험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입니다.  
추후에 청구하더라도,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청구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Q7** 차량 사고의 경우, 자동차보험과의 관계상, 보상여부가 헛갈리는 부분이 있습니다.

**A7** 핵심은, 치료비와 배상책임은 자원봉사종합보험에서 담보되지 않으며, 자동차보험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아래의 표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고유형	자원봉사종합보험 담보여부	기타
자원봉사자가 차량을 운전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물을 손상한 경우 (자원봉사자는 다치지 않음)	담보되지 않음 (자원봉사자 배상책임 면책조항)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 담보로 해결해야 함 (의무보험)
자원봉사자가 자원봉사 활동 중 교통승용구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 (차량탑승 중 또는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승용구에 의한 상해)	치료비는 담보되지 않음 그러나, 기타 상해담보는 보상됨 (상해사망, 입/통원일당 등)	자동차보험의 배상책임담보 또는 운전자 보험 등으로 담보 필요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 Q&A

**Q8** 특정감염(전염)병 담보가 있는데, 코로나도 담보가 되나요?

**A8** 담보되지 않습니다.  
특정전염병 담보는 약관 별표4에 기재된 22종의 법정 전염병을 담보합니다.  
하지만, 코로나19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현재 코로나19를 담보하는 보험상품은 없습니다.

**Q9**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자원봉사활동, 혹은 봉사자 관리를 위해 활동장소에서 활동하는 도중 다친 경우는 보험 적용이 가능한가요?

**A9** 자원봉사센터 직원이 자원봉사자의 신분으로서 자원봉사활동을 하다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담보가 됩니다. 일반적인 자원봉사자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자원봉사자가 아닌 봉사자 관리 등을 위해 직원의 업무수행 중인 상태에서 상해가 발생한 경우, 담보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원봉사자를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Q&A

**Q10** 자원봉사자가 활동하기 전 및 활동 후 귀가 중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이 되나요?

**A10** 보상됩니다.  
자원봉사 활동 중이란 다음의 세 가지로 정의됩니다.

※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동안」이란?

1. 자원봉사활동(정규활동, 특별활동을 포함하며 이하 같습니다)에 직접 참여 중
2. 자원봉사활동 시작 전 또는 종료 후에 활동장소에 있는 동안
3. 자원봉사활동을 위한 활동장소와 피보험자의 주소지와의 통상적인 경로 통행 중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 Q&A

**Q11** 봉사활동을 가던 중, 사고를 당하여 봉사활동에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봉사활동 실적확인서 발급이 안 될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A11** 봉사활동을 위해 이동 중 발생한 사고임을 증명하는 수행기관의 공문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Q12** 봉사활동 중, 자원봉사자가 차량사고를 내거나 당한 경우 보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12** Case1) 자원봉사자가 차량사고를 낸 경우(배상책임)  
약관에 따라 자원봉사자가 차량 소유, 사용, 관리로 인한 사고는 면책입니다.  
다만, 차대차사고인 경우, 자차보험금을 처리한 후 부담한 자기부담금은 50만원 한도내에서 신설된 “자동차보험 자기부담금 보상” 특약으로 담보됩니다.

Case2) 자원봉사자가 차량사고를 당한 경우 의무보험 우선처리 약관에 따라  
치료비는 가해자의 자동차보험에서 처리해야 합니다. \*자동차보험은 의무보험.

단, 가입한 상해담보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예) 통원일당, 입원일당, 골절치료비 등)에는 자원봉사종합보험에서 보상 가능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Q&A

**Q13** 보험금 청구 시, 진단서를 꼭 제출해야 하나요?

**A13**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골절, 화상을 제외한 상해의 경우, 수납비용이 10만원 이하인 소액건의 경우에는 처방전, 초진차트 등 진단 코드가 나와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골절, 화상, 식중독의 경우 별도의 진단금이 지급되므로 진단서를 제출바랍니다.

**Q14** 봉사활동 중, 타인의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신체에 상해를 입었습니다.  
(배상책임 사고) 보험금 청구 시,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4** 제3자 배상책임 사고발생 시, 기본청구서류만 제출바랍니다.  
(기본청구서류 : 보험금청구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봉사활동실적확인서, 봉사자신분증)  
삼성화재 전담 보상팀에서 피해자에게 연락 후, 필요한 서류를 직접 안내 드립니다.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Q&A

**Q15** 봉사자의 소속 수행기관과 활동 수행기관이 다를 경우 어느 수행기관에서 접수를 해야 할까요?

**A15** 활동수행기관에서 접수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관리, 감독 및 확인 의무는 활동 수행기관이 가지기 때문입니다.

**Q16** 피해 봉사자가 아닌 대리인이 청구를 할 경우에는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16** 청구서 이외에 위임장과 보험금 수익자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수행기관 직원이 수령할 경우, 재직증명서 또는 수행기관 직원명이 표기된 공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의 경우 어떠한 경우에도 보험금 수익자는 법정 상속인이어야 합니다.

**Q17** 경미한 사고일 경우에도 진단서가 필요한가요?

**A17** 필수서류는 아닙니다. 골절, 화상을 제외한 상해의 경우, 수납비용이 10만원 이하인 소액건의 경우에는 처방전, 초진차트 등 진단 코드가 나와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합니다.  
골절, 화상, 식중독의 경우 별도의 진단금이 지급되므로 진단서를 제출 바랍니다.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Q&A

**Q18** VMS, DOVOL시스템과 1365 자원봉사 관리센터 청구방법이 같은가요?

**A18** 네, 동일합니다.

**Q19** 자원봉사활동이 해외에서 할 때도 된다고 하는데 같은 조건으로 올해부터 적용되나요?

**A19** 네, 국내와 동일하게 해외 자원봉사 활동 시에도 담보 됩니다.  
단,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인증이 가능한 활동으로 제한됩니다.  
또한 외국인 자원봉사자도 국내 자원봉사자와 동일하게 담보됩니다.  
단, 자원봉사 인증기관에서 확인이 가능한 대상자로 제한함

**Q20** 비대면 봉사활동도 보상이 되나요?

**A20** 네, 가능합니다.  
단, 비대면 봉사활동은 인증기관의 사전 승인 및 가이드라인을 통해 검증된  
비대면 봉사활동에 한해 보상됩니다.

## 보험금 청구 및 기타

---



Q&A

**Q21** 자원봉사활동 중 차량에 의해 사망사고 발생 시 사망보험금은 지급되나요?

**A21** 네, 기본적으로 의무보험 우선 적용이기에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를 받으십니다.  
다만 자원봉사종합보험의 사망보험금은 자동차보험의 보상금과 별도로 담보 가능합니다.

**Q22** 자원봉사활동 중 상해의료비는 개인보험과 구내치료비 중복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A22** 네, 중복보상 가능합니다.  
개인이 가입한 상해의료비와 별도로 구내치료비는 배상책임의 특약으로 지급되기에 이중 지급 가능합니다.

---

## 6. 자원봉사 사고 안전 수칙 가이드

1. 플로깅 안전 가이드
2. 조리봉사 안전 가이드
3. 집 수리 봉사 안전 가이드
4. 교통 정리 봉사 안전 가이드
5. 재난재해 봉사 안전 가이드
6. 봉사활동 중 다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7.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자원봉사종합보험

## 자원봉사 사고 안전 수칙 가이드

"봉사도 중요하지만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활동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나와 주변을 지키고 안전하게 봉사하려면  
어떤 수칙들을 유의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볼까요?"

# 1. 플로깅 안전 가이드

---

## ① 플로깅 전 몸풀기

본격적으로 봉사활동을 시작하기 전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허리, 종아리 등의 근육을 풀어주면 경련 등의 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 ② 장갑 및 집게 이용하기

쓰레기 중에는 유리, 플라스틱 조각처럼 뾰족한 물체가 많기 때문에 맨손으로 주울 경우 부상 위험이 있습니다. 장갑이나 집게 같이 손을 보호할 수 있는 장비를 활용해 주세요.

## ③ 낙상 및 미끄러짐 주의

바닷가나 개천과 같이 물기가 있는 지역에서 플로깅을 하는 경우엔 특히 미끄러짐에 유의해야 합니다.



플로깅 안전 가이드 교육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kYCY2yJ7smA>

▶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2. 조리봉사 안전 가이드

---

### ① 음식 운반 중 대화 자제

봉사 중 음식을 운반하거나 다룰 때는 뜨거운 국이나 물이 흘러 넘칠 수도 있기 때문에 타인과의 대화는 잠시 멈추고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 ② 용기 운반 시 공동 작업

무겁거나 뜨거운 배식 용기를 옮길 때는 혼자서 아닌 주변 자원봉사자에게 도움을 요청해 함께 작업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③ 미끄럼 방지 장화 착용

조리실은 물이나 국물 등으로 바닥이 미끄러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미끄럼 방지 장화 등을 착용해 미끄러짐에 주의해야 합니다.



조리봉사 안전 가이드 교육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NyWE3ybaWIY>

▶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3. 집 수리 봉사 안전 가이드

---

### ① 보호 장구 착용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은 구조물이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 안전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② 낙상 사고 주의

사다리를 이용해 위로 올라갈 때는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타인과의 대화를 멈추고 작업에 집중해 낙상에 유의합니다.

### ③ 감전 사고 주의

전기 제품의 단전 상태를 확인하고 피복이 벗겨진 상태라면 반드시 교체해 주세요.



집 수리 봉사 안전 가이드 교육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wa9H666aQP8>

▶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4. 교통 정리 봉사 안전 가이드

---

### ① 주변 살피기

교통정리는 대부분 4차선, 교차로 등 차량 통행이 많은 곳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늘 주의를 기울이고 집중해야 합니다.

### ② 안전 조끼 착용

밤에 교통 정리 봉사를 진행할 경우 운전자의 시야에 잘 보일 수 있도록 형광, 야광 등 반사 기능이 있는 안전 조끼를 꼭 착용해야 합니다.

### ③ 도로 상태 확인

차량 이동이 많은 도로에는 아스팔트 조각, 도로 파임 등의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봉사 전 도로 상태를 꼼꼼히 확인해주세요.



교통 정리 봉사 안전 가이드 교육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EQ1rhJE3q0A>

▶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5. 재난재해 봉사 안전 가이드

---

### ① 보호 장구 착용

재난복구 환경에서는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이 머리 위로 떨어지거나 감전 등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모, 안전 장갑 등의 보호 장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 ② 유의사항 숙지

봉사 전 담당자의 지시와 유의사항을 잘 숙지한 뒤, 돌발행동을 최소화하고 정해진 범위 내에서만 안전하게 봉사해주세요.

### ③ 미끄러짐 주의

봉사 중에 토사물 더미에 휩쓸려 타박상, 골절 등의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타인과의 대화를 자제하고 복구 작업에만 집중합니다.



재난재해 봉사 안전 가이드 교육 영상 바로보기 <https://youtu.be/IHiesELuPU8>

▶ QR 코드를 스캔하세요.

## 6. 봉사활동 중 다쳤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① 자상

- 가벼운 물체에 찔린 경우 족집게 등으로 이물질 제거 후 거즈나 천을 대고 압박
- 깊게 박힌 경우 병원 방문해 치료

### ② 화상

- 찬물로 10~15분 정도 환부 식히기
- 물집이 생겼을 경우 터뜨리지 말고 병원 방문해 치료

### ③ 낙상

- 낙상 부위에 특별한 상처나 붓기가 없어도 병원 방문해 검진
- 손상 부위를 고정한 채 119 구급대에 도움 요청

### ④ 감전

- 사고 발생 시 전원 차단
- 감전된 사람 발견 시 전기가 통하지 않는 물질로 감전된 사람과 전선 분리

### ⑤ 탈진

- 수시로 물과 이온음료 등을 섭취해 수분 보충
- 젖은 수건 등으로 체온 낮추기

## 7. 자원봉사자와 함께하는 든든한 자원봉사종합보험

자원봉사활동 중 예기치 못한 상해사고 및 배상사고가 발생하였다면,  
자원봉사종합보험을 통해 지원 받으세요!

### 보험적용대상

- 1365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
- VMS(한국사회복지협의회)
- DOVOL(한국청소년활동진흥원)

### 보장대상

자원봉사 포털 사이트를 통해  
참여한 자원봉사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장

### 가입기간

2023.5.1(00시) ~ 2024.4.30.(24시)  
\*사고일 기준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 CS센터&카카오휘담채널

- 카카오프러스친구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 전화 1833-4435

---

## 7. 자원봉사종합보험

### 전용 CS 센터 & 카카오톡 채널

7 - 1 CS 센터 운영

7 - 2 카카오톡 채널 친구 등록 (검색 / QR코드)

7 - 3 카카오톡 채널 HOTLINE 운영

## 7-1. CS 센터 운영

###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 CS 센터 Contact Point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 CS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분들과 센터 담당자의 편의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4가지의 방법으로 상담을 지원합니다.  
: 센터 담당자분들은 각종 문의사항이나 사고 발생 시 편하신 방법으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CS센터 대표번호  
1833-4435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CS센터 팩스  
0303-3444-1365 / 0303-3441-4435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CS센터 이메일  
1365@openyourplan.com  
volunteer@openyourplan.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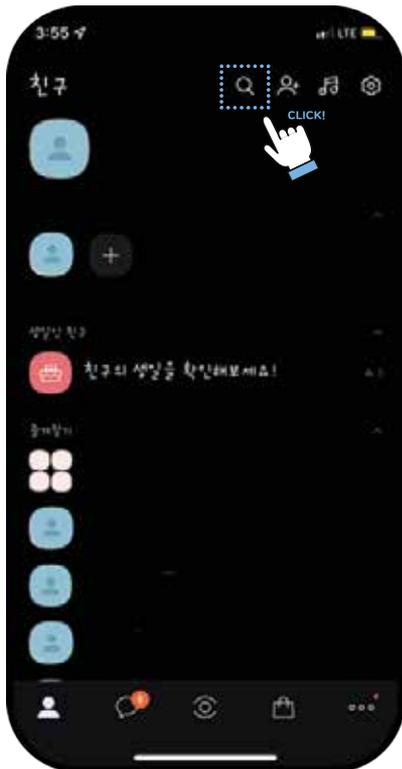
자원봉사종합보험 전용CS센터 카카오톡 채널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 7-2. 카카오톡 채널 친구등록 (검색/QR코드)

### ① 카카오톡 검색창에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 후 친구추가

1

친구찾기 버튼 클릭



2

자원봉사종합보험 검색



3

채널추가 클릭 시 친구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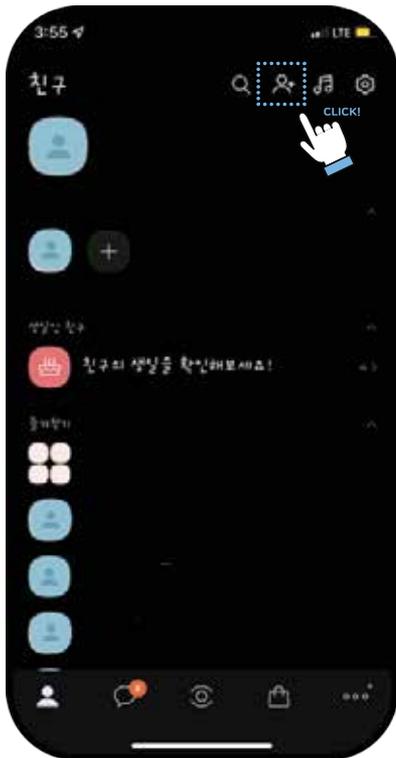


## 7-2. 카카오톡 채널 친구등록 (검색/QR코드)

### ② 카카오톡 검색창에 “QR코드” 스캔을 통한 친구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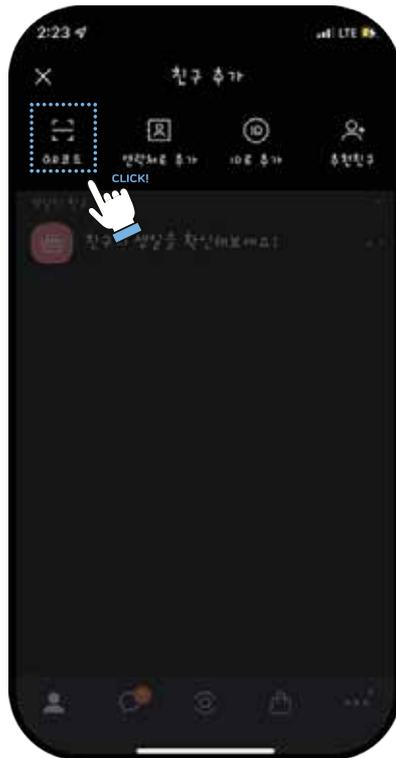
1

친구추가 버튼 클릭



2

QR코드로 검색



3

QR코드 스캔



4

채널추가 클릭 시 친구추가



## 7-3. 카카오톡 채널 HOTLINE 운영

### 카카오프러스 친구 전용 HOTLINE 안내



#### HOTLINE 보험상담

- 친구추가 후 자유로운 상담
- Q&A 가능하며, 친구에게 혹은 가족에게 카톡을 보내듯 자유로운 질문 가능
- 입력된 보험 담보 내용 등은 자동 답변 기능 적용 상황 등 챗봇서비스가 아닌 복잡한 질문은 HOTLINE 전담 인력이 직접 상담

#### 보험금 청구 및 조회 지원

- 보험금 청구 (센터관리자)
- 보험금 청구 진행상황 안내 (구비 서류, 청구 접수 안내, 진행상황, 지급내역 피드백)



# 2023년 자원봉사종합보험 업무 매뉴얼



자원봉사 종합보험  
카카오톡 채널 바로가기